

한국 민간경호 · 경비관련 자격제도 도입방안

박준석* · 박대우**

< 목 차 >

- I. 서 론
- II. 각 국의 민간경호 · 경비관련 자격제도 현황
- III. 민간경호 · 경비관련 자격제도 도입방안
- IV. 결론 및 제언
 - * 참고문헌
 - * ABSTRAC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경찰청에서는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보다 수준 높은 경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경비의 전문화 · 과학화 등 경비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의 정비와 아울러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이 민간경호 · 경비에 종사하는 일선 경호원 및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확보이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민간경호 · 경비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는 자격제도의 구축, 산업계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자격제도의 운영, 자격의 취득을 통한 개인의 능력개발을 강조하는 평생학습 사회 분위기 조성, 민간자격제도의 활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이학박사

** 용인대학교 대학원.

성화 등을 '자격기본법'에 의해 추구하고 있다¹⁾. 이러한 취지로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용적 기능을 연마하여 창의적인 전문인을 육성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진취적 인재를 양성하고, 전문성과 전공과 접목된 정보화 능력, 독창성과 팀워크 등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실무 중심의 자격증이 필요하게 되었다²⁾.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민간경호·경비산업의 성장과 함께 자격증을 활용한 경비원의 도입논의가 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자격증을 가진 민간경호·경비원은 그 동안 문제시 되어왔던 민간경비원 및 경호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국내 민간경호·경비산업은 그 동안 많은 양적 성장을 해왔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민간경비산업 전문화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하여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³⁾.

아직까지도 민간경비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경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의 자질시비, 낮은 처우⁴⁾ 등은 민간경비업의 활성화와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안전이라는 국가적 중요성에 기인하여 공공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사회안전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전문성 확보와 관련된 제도가 '자격증' 제도라 할 수 있다⁵⁾.

최근 국내·외 강력범죄의 증가와 함께 21세기 정보화시대 및 사이버테러의 지능화, 첨단화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기술의 개발 그리고 정보보호, 교도행정과 위생관리, 학교폭력예방 등에 대한 전문 인력양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⁶⁾.

국내에서는 경비원을 교육·감독하는 제도인 경비지도사제도가 1995년 12월 30일 경비업법(법률 제5124호)의 개정으로 규정되어 1997년 제1회 시험을 시작

1) 자격기본법은 1997년 03월 27일 법률 제5314호로 제정, 1999년 01월 29일 법률 제5733호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오고 있다.

2) 정태화 외,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3) 이윤근, '사회 안전 관리 이론 및 실무',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5, p.47.

4) 최종태,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2호, 2002, p.308.

5) 박동균, '한국 경비지도사제도의 발전방향 안', 경호경비연구, 제5호, 2002, p.135.

6) 김두현, 경호경비법 (서울 : 백산출판사, 2001), p.3.

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민간경호·경비원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제도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호·경비원은 결격사유⁷⁾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나 경호·경비원이 될 수 있으며, 신입교육과 직무교육만 받으면 된다.

특히 이 경비지도사 자격증은 경호·경비관련 학문영역에 속하지만 신변보호, 기계경비 안전관리, 의전비서 등 여러 가지 학력수준이나 능력 혹은 경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자격증 제도이다⁸⁾.

민간경호·경비산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은 사회적으로 많이 인식되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호·경비관련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할 수 있다. 더욱 문제되는 점은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않은 민간단체가 자격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국가자격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처럼 선전하고, 이러한 자격의 취득 후 고소득 및 안정된 직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일반인들을 현혹시켜, 자격취득을 위한 수강료 및 교재 대금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국가로부터의 공인된 한국 민간경호·경비관련 자격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현대사회는 지식과 기술이 급변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민간경비원들도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지 않고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전문화된 자격증제도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⁹⁾.

7) 경비업법 제10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박준석, '경호학의 학문적 정립을 위한 발전방안', 제7회 학술발표회, 한국경호경비학회, 2001, p.6.

9) 윤중구, '민간경비원의 전문경비원자격증 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18.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단일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국내 민간경호·경비 자격제도의 모델링을 제시하는 것이다.

외국의 민간경호·경비관련 자격제도와 국내 민간경호·경비 자격제도를 비교하여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외국의 민간경호·경비관련 자격제도는 자격증이 세분화되어 있고, 세분화된 자격증 안에 자격수준이 등급화되어 있어 전문직으로서의 민간경호·경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국내 자격제도는 한 가지 자격제도 안에 모든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경비지도사 자격제도와 특수경비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민간경호·경비원 자체에 대한 자격증이 한 가지도 없는 실정에서 민간경호·경비의 전문화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자격제도를 국내 현실에 적합하게 수용하여, 한국 민간경호·경비관련 자격제도의 모델링을 제시하였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자격제도에 관한 국내외 선행 연구물과 관련 자료 및 문헌을 수집·분석하였다. 외국자료는 민간경호·경비 관련 및 각 국가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문헌과 인터넷을 통한 최신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문헌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민간경호·경비전문가들의 면접을 통한 내용을 논문내용에 첨가하였다.

민간경호·경비관련 자격제도의 운영현황, 기존의 자격제도의 개선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 자격증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자격유형, 자격시험, 자격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폭넓게 조사하고, 선진국의 민간경호·경비 자격제도를 모색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자격제도의 모델링을 제시하였다.

II. 각 국의 민간경호·경비관련 자격제도 현황

1. 미국

미국에선 각 주정부 관할 하에 주정부별로 C.P.P(Certified Protection Professional)¹⁰⁾자격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격증이 아무나 취득이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는 합법적인 경호업의 허가를 주정부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총기소지는 물론이고 경호를 위한 정보의 수집업무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자격증은 철저한 시험과 개인의 심리적, 가정적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C.P.P 자격증을 부여하게 된다.

미국에 있어서 자격제도는 Security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도 크게 발달하여 1968년 각 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의 수가 1,912 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C.P.P자격제도에 대한 응시자격의 경력 및 학력 요건은 학위가 없는 고졸이하 (No Degree)인 경우 9년의 경비경력(2년간은 안전업무책임자), 전문대출업인 경우 7년의 경비경력(2년간은 안전업무책임자), 학사학위소지자인 경우 5년의 경비경력(2년간은 안전업무책임자), 석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3년의 경비경력(2년간의 경비경력 및 안전업무책임자), 박사학위소지자의 경우 2년의 경비경력(모두 안전업무책임자)을 갖추어야 한다고 자격요건으로 규정해 놓았다.

경비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의 합격을 요구하고 있는데 필수과목은 비상계획, 수사, 법률상식, 개인경호, 신변보호, 중요정보관리, 경비관리, 재산보호 등으로 경비와 손실예방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200문항과 선택과목으로 13개 과목에서 선택한 25개 문항 총 225문항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경비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중요시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높은 이직률, 비효율적인 업무수행, 낮은 승진기회와 훈련수준, 저임금 등과 같은 경비업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¹²⁾.

미국의 각 주에서는 민간경비관련 종사자들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서 전문자격증제도 및 교육과 훈련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민간경비

10) C.P.P 자격제도는 미국산업안전협회(ASIS: American Society for Industrial Security)가 시행하는 공인경비사 자격제도이다.

11) Arthur J Bilek, Peter Lejins, Clifford W Van Meter. *Private Security*, (Anderson Publishing co., 1977), p.297.

12) 강길훈, '한국의 민간경비 교육훈련체제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42.

원에 대한 자격증 및 훈련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는 23개 주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민간경비자격위원회(Private Security Advisory Council)는 1973년에 발표된 「미국의 민간경비」(Private Police in the United States: Findings and Recommendation)에서 주정부의 민간경비기관은 모든 분야의 민간경비관련 근로자들에게 최소한 어떤 수준의 개인적 민간경비원 전문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훈련과목, 훈련시간 등의 훈련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버몬트 주는 무장경비원들에게 66시간의 교육과 필기시험, 그리고 무기 소지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텔레웨어 주는 모든 사설형사와 탐정들에게도 법적으로 총기류 훈련을 받게 하고, 매년 자격증을 재교부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경비업법은 총기류를 다루는 모든 경비요원들에게 총기류 취급 자격증(Firearms Certification)을 요구하며, 20시간의 기본적인 훈련과정에 덧붙여 담당부서에서 승인한 20시간의 총기류 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¹³⁾.

따라서 이러한 자격증과 관련된 규정사항에서는 자격증 지원자, 유자격 회사, 자격증 소지에 있어서 변경의 고지, 자격증 갱신, 자격증 증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자격증 위조 및 변조 등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경비업무(경보시스템의 판매 및 설치, 호송업무, 경비 및 순찰 서비스 등)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의 적절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¹⁴⁾.

2. 일 본

일본의 대표적인 자격제도는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기계경비업무관리자, 경비원검정제도 등과 같은 자격제도 및 검정제도를 두고 있다.

일본에서도 전문경비원 자격제도를 이미 시행하여 많은 전문경비원을 배출하

13) 박병식, '민간경비론' (서울 : 법률출판사, 1996), p.56.

14) 안창훈, '시설경비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31.

고 있다.

특히 경비원검정제도는 경비원의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여 합격하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궁극적으로는 경비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또한 이 제도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1급 및 2급의 민간경비원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금융기관의 현금수송과 같은 일반경비업무 외에도 핵연료물질의 운송 등과 같은 특수경비업무도 민간경비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진 각국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국가중요시설인 핵발전소의 경비와 핵연료물질 등 운반에 따른 민간경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시험을 통하여 경비업무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마친 일정수준 이상의 검정합격자들만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을 계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표2-1> 일본 검정합격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종별	공항보안	교통유도	귀중품운반	핵연료물질등 운반	합 계
1 급	569	1,228	1,181	-	2,978	
2 급	1,825	48,572	8,880	279	59,556	
합 계	2,394	49,800	10,061	279	62,534	

자료: 日本全國警備協會, Security Time, 2002년 8월호, Vol.273, pp.10-14.

일본의 경비원에 대한 검정제도는 경비원 개개인의 경비지식과 기술의 향상을 통하여 고객에게 최상의 Security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검정제도만이 경비원의 경비지식과 기술의 향상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합격자의 처우를 향상시키고 배려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경비원들로 하여금 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수

험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전반적인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비원검정제도는 경비원 교육 등에 의한 연구 성과에 대하여 검정하고, 경비원으로서 일정한 지식 등 능력유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경비원의 노력을 촉발하고, 경비업무에 더욱 적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한국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30일의 제5차 경비업법 개정에 의해,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경비지도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경비지도사 제도는 1994년 경찰청 부설 치안연구소의 연구 프로젝트에 의해 제안된 제도이다. 7개월간에 걸쳐 실시된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한국 경비업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경비업계의 발전을 위한 대책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 프로젝트에서 연구진들은 일본의 '경비원 지도책임자' 제도와 '기계경비업무 책임자' 제도를 소개함과 동시에 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성과가 경비업법의 개정으로 이어졌고 경비지도사 자격제도로 신설되게 된 것이다¹⁵⁾.

경비지도사는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국가가 공인하는 국가자격제도이다. 국가자격으로 격을 높이는 것이 경비원의 지위를 높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경비업에 대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비지도사 자격이 신설되고 시험과목이 결정되면서 민간경비분야에 변화가 일어났다. 경비지도사 관련 수험서가 발간되고 그 동안 관심의 사각지대였던 민간경비 분야가 일반인의 관심분야로 자리매김 하는 계기가 되었다¹⁶⁾.

국가는 경비지도사를 관리함으로써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체 경비원들을 통제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15) 박병식, 'Introduction of a Qualification System and Its Expected Effect in the Security Industry', (The 3rd Conference, Bangkok Thailand, 1996).

16) 최선태, '민간경비산업의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75.

<표 2-2> 경비지도사 합격자 현황

구 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	계
일반경비지도사	2,161	7,205	553	734	10,653
기계경비지도사	237	670	81	62	1,050
계	2,398	7,875	634	796	11,703

자료: 경비협회(2003). 경비지도사 협격현황. 1월 3일.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의 지도와 감독 및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된다. 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경비지도사를 말한다.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경비지도사이다. 경비지도사제도는 경비업분야에 우수한 인력들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이다.

III. 민간경호·경비관련 자격제도 도입방안

민간경호경비 관련 자격제도 도입방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02년에 발행된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의 자격항목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의 <표 3-1>과 같다.

<표 3-1> 각 자격항목의 내용

구 분	내 용
수행직무	해당 직종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영역을 각종 직무분석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소개함으로서 자격분야의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
해당자격종목	해당 직종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영역을 각종 직무분석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소개함으로서 자격분야의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
자격취득요건	등급별 검정기준, 응시기준, 자격취득방법, 시험면제사항 등을 소개함으로써 자격취득방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필기시험	필기시험에 대한 시험과목, 출제기준, 시험방법, 시험범위를 제시 (출제기준의 구체적인 세부항목은 제시하지 않음)
실기시험	종목별로 실기시험에 대한 출제기준과 구체적인 시험방법을 설명

1. 수행직무

경비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시설경비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호송경비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신변보호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기계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특수경비업무를 행한다.

또한 대테러에 대한 전문가 육성을 위한 대테러전문가,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는 업무를 행하는 정보분석사, 경호경비에 대한 기획·설계 및 자문업무를 행하는 경호경비컨설팅업체무를 행한다.

2. 해당 자격종목

시설경비사, 신변보호사(경호사), 호송경비사, 기계경비사, 특수경비사 이상 경비업법상에 정의되어 있는 5가지 업무와, 대테러전문가, 정보분석사, 경호경비컨설팅에 대한 자격종목을 정한다.

3. 자격취득 요건

1) 검정기준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모든 자격증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루기보다는 각 자격증을 3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른 검정기준은

다음의 <표 3-2>와 같이 한다.

<표 3-2> 검정기준(私案)¹⁷⁾

종 목	검 정 기 준
시설경비사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신변보호사(경호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호송경비사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기계경비사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특수경비사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대테러전문가	생물테러, 화학테러, 건물테러, 항공테러, 사이버테러 등의 테러의 유형별, 특성별 예방, 대응 등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정보분석사	중요정보 및 첩보를 수집·분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경호경비컨설턴트	경호경비와 관련된 조언, 정보, 및 제안을 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2) 응시자격

각 자격증에 대한 응시자격은 다음의 <표 3-3>과 같다. 구분은 자격증의 구분은 없이 통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통합안에서 등급을 세분화(3등급)하여, 그에 따른 응시자격요건을 제시하였다.

17) 상기 자격기준은 형행 경비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5가지 업무분야별로 작성하였다.

<표 3-3> 응시자격(私案)

구 분(공통)	응 시 자 격 요 건
1급	2급 취득 후 경호경비업무 경력 5년 이상인자
2급	대학교졸업(예정)자로 자격검정과목 이수자 대학원에서 자격검정에 필요한 공통필수관련 과목 이수자 대학교졸업 후 경호경비업무 경력 2년 이상인자 전문대학졸업 후 경호경비업무 경력 4년 이상인자 3급 자격 취득 후 경호경비업무 경력 2년 이상인자
3급	전문대학졸업(예정)자로 자격검정과목 이수자 전문대학졸업 후 경호경비업무 경력 1년 이상인자(비전공자) 고등학교졸업 후 경호경비업무 경력 2년 이상인자 대학교에서 자격검정 전문선택영역 관련 학과(전공)졸업자

3) 자격취득방법

3급 자격증의 경우 최소학력기준은 고졸이나 경호·경비업무 경력을 최소 2년 이상인 자로 정한다. 전문대나 4년제 대학 경호·경비관련학과 졸업생 중 검정과목을 이수한 자가 응시가능 하도록 한다.

<표 3-4> 자격취득방법(私案)

종 목	검정절차	합격기준	공통사항
시설경비사 호송경비사 특수경비사 대테러전문가 정보분석사 경호경비컨설턴트	필기 및 면접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면접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 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신변보호사 (경호사) 기계경비사	필기, 실기 및 면접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면접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4) 시험면제사항

시험에 관한 면제사항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비지도사제도와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채용시험과목을 기준으로 구성해 보았다.

<표 3-5> 시험면제사항(私案)

구 분	면 제 사 항
시설경비사 신변보호사(경호 사) 호송경비사 기계경비사 특수경비사 대테러전문가 정보분석사 경호경비컨설턴트 공통으로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당해 필기시험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며, 동일 등급의 다른 업무자격종목의 검정을 받을 경우 중복되는 자격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대통령경호실 법에 의한 경호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 병과 또는 현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 필기시험

1) 검정과목

검정과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비지도사제도와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 채용시험과목을 기준으로 구성해 보았다. 내용은 다음의 <표 3-6>과 같다.

<표 3-6> 검정과목(私案)

종 목	과 목 명
시설경비사	일반상식, 법학개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민간경비론, 경호무도, 테러학, 소방학, 응급처치법, 안전진단실무, 안전관리학

신변보호사 (경호사)	일반상식, 법학개론, 경비업법, 민간경비론, 헌법, 영어, 행정학, 형사소송법, 정보학, 경호무도, 경호실무, 테러학, 소방학, 범죄학, 응급처치법, 경호비서 실무, 사격
호송경비사	일반상식, 법학개론, 경비업법, 민간경비론, 경호무도, 테러학
기계경비사	일반상식, 법학개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민간경비론, 정보학, 경호무도, 테러학, 소방학,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응급처치법, 안전진단 실무, 안전관리학
특수경비사	일반상식, 법학개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민간경비론, 영어, 경호무도, 테러학, 소방학, 응급처치법, 안전진단실무, 안전관리학, 사격 및 총기조작, 정신교육, 체포 및 호신술, 기계경비실무, 정보보호 및 보안, 민방공, 시설경비
대테러전문가	일반상식, 법학개론, 경비업법, 테러학, 생물학, 안전학 등의 테러관련과목
정보분석사	일반상식, 법학개론, 경비업법, 정보수집론, 정보분석론, 통계학, 컴퓨터관련 과목 등
경호경비컨설턴트	일반상식, 법학개론, 경비업법, 경호경비기획, 상담전략, 정보분석, 경영학, 경호경비행정학, 리더쉽론, 상담법관련과목 등

2) 검정방법

<표 3-7> 검정방법(私案)

구 분	검정방법	합격기준
자격증 1급	5개 과목의 주·객관식 필기시험	필기시험 : 매과목 만점의 4할이상, 저과목 평균 6할이상 득점
자격증 2급	공통필수영역의 5과목, 공통선택영역 5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여 객관식필기시험·전문선택영역 5과목 중 2과목 선택하여 주·객관식필기시험 및 면접	면접시험 : 불합격자에게는 다음 기회의 시험에 필기시험 면제
자격증 3급	공통필수영역 5과목, 공통선택영역 5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여 객관식필기시험 및 전문선택영역 5과목 중 2과목 선택하여 주·객관식필기시험 및 면접	

5. 실기(면접)시험

1) 검정과목 및 출제기준

<표 3-8> 검정과목 및 출제기준(私案)

종 목	출 제 기 준
시설경비사, 신변보호사, (경호사), 호송경비사, 기계경비사, 특수경비사	경호·경비업무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경호·경비업무에 관련되는 기본법률지식 경호·경비업무분야별 전문기술 및 지식 민간경호·경비원들에 대한 지휘통솔능력
대테러전문가	테러분야별 전문기술 및 지식
정보분석사	정보, 첨보 관리능력 및 분석능력
경호경비컨설턴트	경호경비 기획, 설계, 계획능력 및 자문

2) 검정방법

<표 3-9> 검정방법(私案)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시 간
시설경비사	구술형 면접	10분 이내
신변보호사 (경호사)	구술형면접 및 경호무도	각각 10분 이내
호송경비사	구술형 면접	10분 이내
기계경비사	구술형면접 및 기계조작	각각 10분 이내
특수경비사	구술형 면접	10분 이내
대테러전문가	구술형 면접	10분 이내
정보분석사	구술형 면접	10분 이내
경호경비컨설턴트	구술형 면접	10분 이내

6. 교육훈련기관

민간경호·경비원자격제도 전반을 주관할 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관기관에서는 전반적인 운영과 평가 및 교육체제를 구축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관기관에서는 단순한 평가뿐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주관기관은 크게 국가기관과 민간기관으로 분류하여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공신력 및 그 체제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상업성이 배제되고 초기의 참여도나 관심도가 높을 것이다. 반면에 민간기관의 경우에는 현장 적응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민간 기관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전반적인 국가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민간기관의 경우 시험의 공정성, 신뢰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경비업법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신임교육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 경찰교육기관, 경비업무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고, 직무교육은 경비업자가 실시한다.

주관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평가 시 전국단위로 여러 가지 기자재가 동원되어야 하므로, 기존 시설 및 시험 운용 능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7. 취득자 우대방안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우대방안으로는 다음의 <표 3-10>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격제도의 도입은 기존 경호·경비인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표 3-10>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우대 방안(私案)

- ① 경호·경비자격 중 취득자격증 외에 추가 취득할 경우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예: 1차시험 면제)
- ② 소정의 자격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도 검정기준, 과목, 응시자격, 경력 등이 자격제도의 기준에 상당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자격증을 지급할 수 있다.(경력자우대)
- ③ 경호·경비자격증 소지자가 석사나 박사 등의 고등교육기관에 민간경호·경비관련 전공으로 진학하고자 할 경우 우대하여 선발할 수 있다. (산학협력)
- ④ 민간경비의 업무분야별로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자격증 시험 대상을 넓고 유능한 고학력 출신에 맞추기에도 한계가 있다. 즉, 장기적으로는 민간경비산업이 선진국에서와 같이 가장 인기 있는 비교우위산업이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일부 규모가 큰 경비회사에서만 넓고 유능한 대졸출신을 채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전반적인 민간경비 산업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설정이다. 따라서 자격증시험의 실시에 있어서도 단기적으로는 기존경비인력의 연령에 맞추어 실시하되, 가장 최적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민간경비원에 대한 자격증제도는 현재 미국·일본 등 선진국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¹⁸⁾.

경호 및 경비업에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호원과 경비원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경력인정과 시험에 의해 자격이 주어지더라도 실무수습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만 경호원, 경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격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전문

18) 정진환, '개정경비업법의 문제점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제3회 정기학술세미나, 2001, p.87.

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자질향상을 위해서 선발과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할 때는 6개월 이상의 실무 수습 이수를 의무화 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법제화해야 한다. 자격증과 신변보호에 관한 법률 제도 및 보험관계가 논의되어야 한다. 현행 법 관계에 따르면 민간 경호·경비원의 법적 지위를 그 역할에 필요한 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는 아무 것도 없다¹⁹⁾.

일정수준 이상의 경호·경비전문 지식과 기능을 갖춘 자로 하여금 민간경호·경비업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하겠다.

민간경호·경비원자격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인 기반여건 조성과 지원체계가 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며,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경호원과 경비원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은 비전공자에게도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하고, 합격 후 자격갱신제도를 활용하여 자질부족자에 한하여 자격을 취소시켜야 한다.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경비협회는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하며, 특히 민간경호·경비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 끊임없는 정책적 대안의 연구·개발, 대정부 건의 및 로비,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한 민간경호·경비의 인식전환, 홍보활동의 강화, 회원사관리 등에 더욱 중점을 두고 여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²⁰⁾.

업무의 체계 확립을 위해서 자격증의 업무범위를 경호·경비업무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야 하고, 각 분야별 경호원 및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들만 경호·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법령의 개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법령개정에 의해 제도의 기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에 이상의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모

19) 박준석, 앞의논문, p.6.

20) 정진환, '한국민간경비산업의 발전과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호, 1995, pp.64-65.

색해보아야 한다.

또한 전국경호경비관련 학과의 협의체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2. 제 언

본 논문의 논의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현재 중요시 부각되고 있는 테러에 관한 자격증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국제 정세에 비추어 볼 때 이젠 아시아도 더 이상의 테러의 불모지가 아니다. 한국의 이라크파병 결정에 의해 한국도 테러의 대상국이 되고 있으며, 얼마전에는 한국인 2명이 피살당하는 등 테러에 대한 문제는 매우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아직 테러에 관한 전문가가 전무한 실정이다. 민간경비자격증에 관련해서 테러에 대한 분야별 자격증을 신설하여 전문가를 양성함이 당연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OECD 회원국 등 모든 선진국가들의 어떤 형태로든 탐정(민간조사원)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 대부분의 주와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독일, 벨기에, 호주, 싱가포르 등 상당수의 국가들이 공인탐정제도를 채택하여 엄격한 자격시험과 고도의 훈련을 거쳐 그들이 가진 기술을 가지고 그들에게 문제를 의뢰한 개인 또는 기업을 도와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 영국의 경우는 누구나 탐정 간판만 걸면 영업을 할 수 있기도 하며, 일본의 경우는 민간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탐정(민간조사원)을 할 수 있는 실정이다²¹⁾. 따라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관련법규를 마련하여 탐정(민간조사원)업무를 제도적으로 체계화 시켜야 한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시설경비사, 신변보호사(경호사), 호송경비사, 기계경비사, 특수경비사 등의 자격제도에 대한 방향은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첫째, 자격검정의 기준 및 내용이 실무(현장)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현재 활용성이 부족한 자격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21) 이동영, '공인탐정제도의 필요성', 수사연구, 4월호, 2001, p.11.

둘째, 계속교육훈련으로 얻어지는 직업능력을 자격화하기 위해서도 자격검정 시험의 기준 및 내용이 실무(현장)와 연계되어야 한다. 여기에 현장의 전문가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현장성 있는 자격은 경호원 및 경비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셋째, 실무(현장)과 연계된 자격은 그 자체로 정규교육훈련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교육훈련 제공자들은 자격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과정 및 내용을 조직할 것이고, 일-자격-교육훈련의 연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길훈(1999). 「한국의 민간경비 교육훈련체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상지대대학원.
- 김두현(2001). 「경호경비법」. 서울: 백산출판사.
- 박동근(2002). 「한국 경비지도사제도의 발전방향 안」. 「경호경비연구」 제5호. p.135.
- 박병식(1996). 「민간경비론」. 서울 : 법률출판사.
- 박병식(1996). '*Introduction of a Qualification System and Its Expected Effect in the Security Industry*'. The 3rd Conference. Bangkok Thailand.
- 박준석(2001). 「경호학의 학문적 정립을 위한 발전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제7회 학술발표회.
- 안창훈(1999). 「시설경비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대학원.
- 윤중구(2002). 「민간경비원의 전문경비원자격증 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대학원.
- 이동영(2001). 「공인탐정제도의 필요성」. 수사연구. 4월.
- 이윤근(1995). 「사회 안전 관리 이론 및 실무」. 동국대대학원.
- 정진환(1995). 「한국민간경비산업의 발전과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호.
- _____(2001). 「개정경비업법의 문제점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 제3회 정기학술세미나.
- 정태화 외(1998).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선태(2000). 「민간경비산업의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체대대학원.
- 최종태(2002).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2호.

Athur J Bilek. Peter Lejins. Clifford W Van Meter(1977). *Private Security*, Anderson Publishing co.

ABSTRACT

A Study on the Plan for Professional License of the Private Security in Korea

Park, Jun-Seok · Park, Dae-Woo

According to current record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more than 107,963 private security guards are employed by 2,051 security guard association. However, it is obvious that there is lack of any kinds of professional license.

To ensure the profess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at the same time to improve the quality of private guard dut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rofessional license system which is specialized and developed.

The kinds of license anticipated are security guards services, armored car services, alarm services, proprietary security services, special guards services, terror, security consultants services, and private investigators..

To settle those license system, there should be not only exertion of academic society but also administrative support of government and research of legal office to arrange legal and official structure.